의안 번호	59

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9.28.)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9.28.

산업경제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일: 2026. 8. 26. 창원시장

나. 회부일자: 2026. 8. 27.(의안번호 제59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9.28.)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자: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자살예방 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의거, 정신건강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창원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창원시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 운영)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필요성

- 사업동향 측면
 : 사업의 다양화, 전문화 흐름에 따른 유연한 대처 어려움
- 인력 측면
 : '정신 응급상황' 발생 시, 고도로 훈련된 전문요원 부족하고 종사자의 잦은 퇴사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저하 및 공백 발생
- 평가 측면
 :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사업인력 1인당 정신질환자 관리자 수 축소 지향(사례관리 업무 강화),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수행, 평가 및 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등 자살예방사업

○ 지역사회내 정신보건 자문 및 기타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 등

라.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 소 재 지 : 마산보건소(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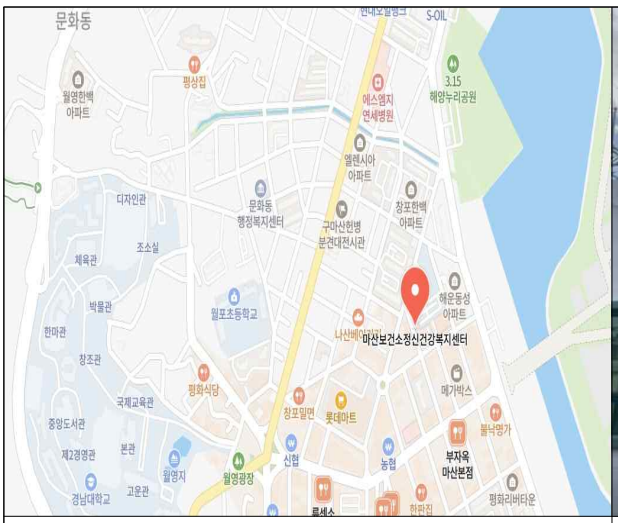
○ 기본시설 :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278m^2)

○ 운영인력 : 10명(전문인력 5, 미자격 5)

○ 이용대상 : 정신질환자 및 가족, 일반시민

○ 시설용도 :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 위치도

	
마산보건소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마산보건소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마. 위탁기간 : 3년(2027. 1. 1.~2029. 12. 31.)

바. 민간위탁 예산

연도별	사업비용 (백만원)	예산과목	산출근거 (2026년 본예산 기준, 교부금액 따라 변동가능)
2027년	970	민간위탁금	인건비 646, 사업비 324
2028년	970	민간위탁금	인건비 646, 사업비 324
2029년	970	민간위탁금	인건비 646, 사업비 324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동의안 참고사항 참조

○ 심 의 일 : 2026. 8. 21.(금)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 통지

4.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전현주)

○ 본 동의안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상담사업과 정신질환자의 관리·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마산보건소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음.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 정신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요구하는 본 사무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제6항[1] 및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2]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3]에도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6개소 중 158개소(64.2%)가 민간위탁으로, 88개

1)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3)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위탁 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소(35.8%)가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에도 창원·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2027. 1. 1.부터 2029. 12. 31.까지 3년으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위탁기간인 3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조례에 저촉되지 않음.

○ 또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2026. 8. 21. 창원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적정'으로 원안가결하여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음.

○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복잡·다양해지는 정신건강 문제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 정신건강서비스의 연속성 및 질적 수준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직영 운영과 비교하여 민간위탁 시 연간 약 5억 8,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기관인 만큼, 집행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지도·감독과 사업성과 관리 등을 통해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수탁기관 변경 등에 따른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고용승계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탁 이후에도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

5. **질의·답변요지**: 기재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동의)**

8. **소수의견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참 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설립 현황

구 분	설 립	근무 인원	운영 현황	현 수탁기관 (위탁기간)	위치	비 고
창 원	1999. 5. (민간위탁)	20명	민간위탁 (최초 '99.5.)	동양의료재단 연세사랑병원 ('26.1.1.~'28.12.31.)	성산구 중앙대로 162번안길 8, 창원보건소 4층	자살예방센터[부설형] : 2026. 5.
마 산	2001. 4. (직영)	12명	직영	-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진 해	2007. 6. (직영)	12명	민간위탁 (최초 '26.1.)	국제의료재단 의령사랑병원 ('26.1.1.~'28.12.31.)	진해구 중원동로 62, 서부보건지소 3층	